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31891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재판경과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3189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3016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3. 10 선고 2014가단5421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B지역주택조합

판결 선고 2016. 11. 25.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30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에 따라 건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원고가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가 2012. 8.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의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이 기각하였던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쟁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의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다음날인 2013. 2. 2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와 같이 파기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